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0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7. 1.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4. 7. 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4. 7. 17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○ 남산공원 “오토캠핑장”의 시설물 폐지 및 “힐링캠핑장”의 조성에 따른 힐링캠핑장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

「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→ 「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나. 캠핑장 위치 및 운영 시설의 종류 변경

1) 캠핑장 위치 변경(안 제2조)

- 고성읍 신월리 → 고성읍 수남리

2) 제외되는 시설에 따른 정의 규정 정비(안 제3조)

- 카라반사이트, 카라반, 글램핑 등 정의 삭제

3) 시설이용료 조정(성수기, 비수기 구분 삭제 등)(별표 1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의견[(복지지원과-16481(2024. 4. 19.))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▢ 제9조(사용료 감면)제1항 ⇒ 조례 개정 사항 없음	▢ 제9조(사용료 감면)제1항 ⇒'「주민등록법」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은 100분의 30을 감면'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	▢ 검토의견 불수용 ⇒ 기존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은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였으며, 시설규모는 텐트사이트 등 41면으로 운영하였으나, 금번 개정을 통해 위치 변경 되는 힐링캠핑장은 텐트사이트 12면으로 운영 계획하고 있어 수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금 감면대상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718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4. 22. ~ 2024. 5. 13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 · 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폐지 및 힐링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제명변경
  ◦ 「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→「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
- 위치 및 정의(안 제2조～제3조)
  ◦ 위치를 고성읍 남산로 6-60으로 규정하고
  ◦ 힐링캠핑장에서 운영하는 “캠핑장”과 “텐트사이트”에 대해 정의하였음.
- 시설사용료 및 사용자 수칙 정비(별표 1, 별표 3)

○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　론: 없음

9. 심사결과: 2024. 7. 17.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